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K-뷰티의 세계 최고 수준 도약 지원 위해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 국민연금 대체투자에 대한 책임투자 적용 법적 근거 마련 -
-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확인 의무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20일(목) 제43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국민연금법」·「약사법」·「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1.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국회는 화장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해당 법률에서는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도, ‘화장품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의 주무 부처로서 K-뷰티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국민연금이 대체투자*를 할 때에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투자 대상과 관련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 자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

이와 함께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ESG 요소를 고려하는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 정보시스템(DUR, Drug Utilization Review)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와 함께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하였으며, 의약품 도매상이 2촌 이내의 친족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및 판매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의 특성 및 중증도, 의료기관의 종류별 특성, 간호사의 근무 형태 및 근무부서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병원급 의료

기관의 간호사 1명당 환자 수의 적정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간호사 배치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에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 준수 현황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간호사는 환자 간호에 더욱 집중하고, 환자는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제438회 국회 본회의 의결(8. 20.) 법률안 주요 내용

담당부서	총괄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책임자	과 장	이두리	044-202-2270
			담당자	사무관	윤민수	044-202-2271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산업정책국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유라	044-202-2940
			담당자	사무관	김소연	044-202-2945
	국민연금법	연금정책관 기금운용관리과	책임자	과 장	임현규	044-202-3190
			담당자	사무관	이지연	044-202-3663
	약사법	보건의료정책관 약무정책과	책임자	과 장	양명철	044-202-2490
			담당자	사무관	이용수	044-202-2494
			담당자	사무관	정아영	044-202-2492
	간호법	의료자원정책관 간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하진	044-202-1760
			담당자	사무관	김희영	044-202-176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책임자	과 장	박민정	044-202-3050
			담당자	사무관	이현희	044-202-3056
	사회보장급여법	복지행정지원관 지역복지과	책임자	과 장	서일환	044-202-3120
			담당자	사무관	이형주	044-202-3122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승일	044-202-2450
			담당자	사무관	김효정	044-202-3718
	심뇌혈관질환법	지역필수의료정책관 필수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백경순	044-202-1940
			담당자	사무관	김제중	044-202-1941
	아동복지법	인구아동정책관 청년정책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044-202-3701
			담당자	사무관	정예진	044-202-3361
	장기등이식법	의료자원정책관 혈액장기정책과	책임자	과 장	허창호	044-202-1770
			담당자	주무관	주환석	044-202-1772

연번	법안명	주요 내용	시행일
1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명)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의) '화장품산업'을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을 연구개발·제조·생산·유통·판매·수출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 ▶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시행)계획 수립(종합계획 수립 시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의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신설, '3년주기 화장품산업 실태조사 실시 및 공포 ▶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두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인증 취소 및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 등 심의 ▶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도 마련,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지원, '인증 전담기관 지정 근거 마련, '혁신형 화장품기업 우대 조항 신설 ▶ (연구개발)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화장품산업 관련 시험·평가 및 연구 지원, '지속가능성 대응 및 친환경 인프라 조성 지원 ▶ (화장품산업 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 '화장품 원료·용기 산업 육성 및 지원, '유통구조 개선 및 판로 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화장품기업 등의 국제협력 지원, '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식재산권 보호, '화장품산업 클러스터의 지정, '산학연관 협력 및 공동인프라 조성, '중소·중견기업의 우대 등 규정	공포 후 1년
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주식·채권에 더하여 대체투자를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책임투자의 대상으로 추가 (구체적 대상은 시행령 위임) ▶ 기금운용지침에 ESG 요소의 고려 기준 및 방법을 포함	공포 후 6개월

연번	법안명	주요 내용	시행일
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환자에게 처방 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할 경우 과태료(100만원 이하)를 부과함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의 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 ▶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의료법」에 따른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함 ▶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	공포 후 1년
4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의 특성 및 중증도, ‘의료기관의 종별 특성, ‘간호사의 근무 형태 및 근무 부서별 특성,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간호사 대 환자 수의 적정 기준(간호사 적정 배치기준)을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함 ▶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간호사 배치 현황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적정배치기준 준수 현황을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공포 후 3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날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 등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급여 결정 및 변경 내용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함 ※ 현행법은 급여 결정·변경 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수급권자(신청인)에게 통지	공포 후 6개월

연번	법안명	주요 내용	시행일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각각 시·도 및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함 ▶ 지역사회보장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자문, 지역사회보장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수준 평가 등을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로 명시함	공포 후 1년
7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 중 현행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사회보장, 지역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한다),’으로 개정 * 시·도지사 / ** 시장·군수·구청장	공포일
8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의) ‘심뇌혈관질환 정의에서 심혈관질환을 심장혈관질환으로 변경, ‘심뇌혈관질환 종류에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추가, ‘진료권 정의 신설 ▶ (종합계획) 종합계획에 포함될 내용에 ‘이전의 종합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추가 ▶ (심뇌혈관질환센터 조항 정비 및 심뇌혈관 관리를 위한 지원)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시행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확대,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심뇌혈관질환의 진단에 관한 사항 추가(기존 예방·치료·재활만 규정), ‘심뇌혈관조사통계사업의 시행 주체를 ‘질병관리청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확대 ▶ (심뇌혈관 질환센터 조항 정비)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기간 신설(5년),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및 취소에 관한 규정 신설,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 구축 관련 내용 신설,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항목에 ‘심뇌혈관질환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추가, ‘비용 지원 시 평가 결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공포 후 6개월 (다만,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된 내용은 2027. 3. 11.)

연번	법안명	주요 내용	시행일
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립 지원의 내용에 법률·금융·경제 교육을 명시하고, 취업 지원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	공포일
1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지정 규정을 신설해 비혈연 조혈모세포이식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근거 마련	공포 후 6개월